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-13호

「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6월 5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3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교육의 횟수 및 시간, 내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교육 대상, 횟수 및 시간, 내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(안 제13조제1항)
-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제2항)
-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자구 수정(안 제13조제3항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5. 6. 5. ~ 6. 10. (5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: 061-830-6095, 팩스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(이하 “택시운수종사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1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

가. 교육 대상: 교통사업자

나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: 1회, 4시간 이상

다. 교육 내용: 다음 1)부터 3)까지의 사항

1)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

2)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

3)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

가. 교육 대상: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

나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: 연 1회, 2시간 이상

다. 교육 내용: 다음 1)부터 4)까지의 사항

- 1)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
- 2)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
- 3)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
- 4)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

3. 성폭력 예방교육

가. 교육대상: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

나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: 연 1회, 1시간 이상

다. 교육내용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직원연수·조회·회의 등의 집합교육
2.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
3. 체험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3조(교육) ① <u>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</u></p> <p>2. <u>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</u></p> | <p>제13조(교육) ① <u>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,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(이하 “택시운수종사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</u> 가. <u>교육 대상: 교통사업자</u> 나. <u>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: 1회, 4시간 이상</u> 다. <u>교육 내용: 다음 1)부터 3)까지의 사항</u> 1) <u>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</u> 2) <u>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</u> 3) <u>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2. <u>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</u> 가. <u>교육 대상: 특별교통수단</u></p> |

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
시운수종사자

나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
간: 연 1회, 2시간 이상

다. 교육 내용: 다음 1)부터 4)
까지의 사항

1)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
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

2)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
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

3)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
및 서비스 요령

4)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
방법

3. 교통약자의 인권 및 교통약
자서비스

4.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
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
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
항

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할

3. 성폭력 예방교육

가. 교육대상: 특별교통수단
을 운행하는 운전자

나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
간: 연 1회, 1시간 이상

다. 교육내용: 「성폭력방지
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
각 호의 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

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합
께 교육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전문
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
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교
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
있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직원연수·조회·회의 등의

집합교육

2.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

용한 원격교육

3. 체험교육

③ ---- 제1항에 따른 ----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| 자치법규안 내용 | 찬 성 여 부 |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